

아미4 행복주택 입주자격

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㉒와 ②~④)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①-㉒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100%
5인	7,326,072원 이하	100%
6인	7,779,825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본인의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울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자
2순위	경상남도(1순위 지역 제외)가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우선공급 순위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선순위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부산광역시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시설 포함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구 외 부산광역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1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	대학생	부모 모두 부산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서구 외 부산광역시에 거주 (부 또는 모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서구 외에 거주해야 함)
	취업준비생	본인이 부산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거주	본인이 부산광역시 서구에 3년 미만 거주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배점항목은 우선공급 1순위로 신청한 분에게만 적용합니다.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선순위	추첨
	1,2순위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유의사항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 대학생은 거주지 또는 대학소재지 기준요건을, 취업준비생은 거주지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의 부모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 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의미합니다.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과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 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를 포함하여 인정학력 취득시점을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하며,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2022.5.31.) 현재 합격증명서를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대학교 졸업유예자는 대학생계층 중 대학생의 일반자격에 해당하며, 졸업 유예자가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할 경우 일반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결격 처리됩니다.

2. 청년 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청년은 ①-㉓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㉒와 ②~⑤)

①-㉓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①-㉒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인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단,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100%
	5인	7,326,072원 이하	100%
	6인	7,779,825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3,854,536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울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경상남도(1순위 지역 제외)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우선공급 순위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선순위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부산광역시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시설 포함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구 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우선공급 배점 (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부산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거주	부산광역시 서구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선순위 공급은 우선공급 배점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공급 하며, 선순위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명, 납입회차 정보 등의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 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선순위	추첨
	1,2순위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유의사항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①-㉠ 1)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을 발급)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할인된 임대조건(동일면적, 동일유형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①-㉔ 2)의 '퇴직'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
- ▷ ①-㉔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
- ▷ 청년 계층 해당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 처리 됩니다.**
- ▷ 사회초년생 중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퇴직한 상태이므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를 '거주지'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신청 시 '소득없음'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단, 공고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인 경우 "소득있음"으로 체크)

3.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①-㉔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③~⑥을, 한부모가족은 ①-㉔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 ①-㉔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①-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①-㉔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 ②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2,555일)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단, 가구원수 2인인 경우 110퍼센트, 맞벌이 부부일 경우 2인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 가구원수 | 일반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 맞벌이 신혼부부 | |
|------|-----------------|------|---------------|------|
|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5,328,807원 이하 | 110% | 6,297,681원 이하 | 130% |
| 3인 | 6,418,566원 이하 | 100% | 7,702,279원 이하 | 120% |
| 4인 | 7,200,809원 이하 | 100% | 8,640,971원 이하 | 120% |
| 5인 | 7,326,072원 이하 | 100% | 8,791,286원 이하 | 120% |
| 6인 | 7,779,825원 이하 | 100% | 9,335,790원 이하 | 120% |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울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경상남도(1순위 지역 제외)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일반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활동 소재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본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우선공급 순위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구 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배점 (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부산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거주 (2019.5.31. 이전 서구에 전입, 당일포함)	부산광역시 서구에 3년 미만 거주 (2019.6.1. 이후 서구에 전입, 당일포함)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배점은 신청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대표신청자)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및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대표신청자가 아닌 예비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은 배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명, 납입회차 정보 등의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 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유의사항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해당세대'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함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태아의 경우 불필요)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소득이 있는 업무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해당주택 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모든 혼인기간(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재혼한 경우 재혼 전 혼인기간 포함)을 합산하여 2,55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명 중 1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 관계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한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하여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외국인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에도 신청 불가)
- ▷ 행복주택 신혼부부계층 신청 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중 발급 가능한 한 가지를 추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일 기준으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계층으로 신청 불가)

4. 고령자 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100%
5인	7,326,072원 이하	100%
6인	7,779,825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이하 일 것

※ 만 65세 이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1957.5.31.(당일포함) 이전에 출생한 자를 의미합니다.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함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우선공급 순위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구 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만 75세 미만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부산광역시 서구에 5년 이상 거주	부산광역시 서구에 5년 미만 거주	부산광역시 서구 외 부산광역시에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우선공급 배점 중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가점대상입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변경)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①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우선공급 순위요건을 갖춘 자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구 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5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5년 미만 거주	부산광역시 서구 외 부산광역시에 거주
②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호대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지원대상한부모가족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우선공급 배점 중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가점대상입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변경)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6. 기존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인 기존거주자

- ※ 기존거주자가 청약접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미4 행복주택 사전희망 신청서를 통해 기신청한 평형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형 변경 불가)
- ※ 기존거주자가 계층별 공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임대조건은 해당 계층에 따릅니다.